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4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 박정하・박준태・김상훈

박성민 • 이인선 • 김용태

김승수 • 박수민 • 신동욱

신성범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

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3(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

야 한다.

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	제12조의3(공립 박물관・공립 미
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u>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u>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
<u>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u>	<u>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u>
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3조
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
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	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
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u>정한다.</u>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 저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		
물관·공립 미술관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로		
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		
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16조(등록 등)		
<u>시·도지사</u>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